

2026. 7. 31.(금) 10:00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새만금신항 매립지 합리적 관할결정 촉구 및
지역갈등 조장 행태 규탄 결의안



김 제 시 의 회

새만금신항 매립지 합리적 관할결정 촉구 및 지역갈등 조장 행태 규탄 결의안

(오승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6 - 82
----------	-----------

발의연월일 : 2026. 7. 31.

발 의 자 : 이정자, 유진우, 주상현,
김영자, 오승경, 최보선,
오상민, 김민완, 장민우,
김승일, 문순자, 김진수,
손정애, 정경원 의원(14명)

1. 주 문

붙임 “결의문” 과 같음

2. 제안이유

-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조성 중인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음
- 새만금신항 관할은 기존 해상 이용관계나 특정 지역의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대법원 판례 및 중앙분쟁조정 위원회가 확립해 온 객관적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새만금 2호 방조제,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등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것은 연접성, 행정효율성, 주민 편의성 등 그간 확립된 매립지 관할 결정기준을 종합판단한 합리적 결과이므로,

이를 이유로 새만금신항 관할결정에서 김제시에 불리하게 판단해서는 안 됨

- 새만금신항은 진입도로를 통해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고, 스마트 수변도시와 동서도로, 농생명 용지 및 새만금 내부개발지역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접근·개발축에 포함되어 있어 지리적·기능적으로 김제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그럼에도 군산시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와 공직자의 출신 지역을 문제 삼고, 김제시의 관할권 주장 철회를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관할 문제를 정치적 압박과 지역갈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군산 출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임명 당시 김제시는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전북 전체의 발전을 위해 이를 문제 삼지 않았음에도, 군산시의회가 특정 공직자의 출신지역을 이유로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은 이중적이고 부적절한 행태임
- 이에 김제시의회는 군산시의회의 지역갈등 조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치적·지역적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 기존 관할결정과의 일관성, 새만금 전체의 미래를 기준으로 새만금신항 매립지 전체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문제는 국가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신규 토지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을 결정하는 법적·행정적 사안임
- 신규 매립지 관할은 매립사업 계획, 전체 관할구도, 연접관계, 경계 명확성,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성, 해양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새만금 2호 방조제,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등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것은 판례와 중분위 판단기준에 따른 결과이며, 이를 이유로 새만금신항에서 김제시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판단해서는 안 됨
- 새만금신항은 진입도로를 통해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고, 동서도로·스마트 수변도시·농생명용지·배후산업지역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접근·개발축에 포함되어 있음
- 새만금신항과 배후지역 관할을 일치시키는 것은 항만 종사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도로·교통·환경·재난·기업지원·생활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합리적 방안임
-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 운영과 해상안전은 국가와 항만관리청의 권한이므로, 기존 항만운영 경험이나 주변 해상행정 관행을 매립지 관할의 결정적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됨

- 군산시의회가 공직자의 출신지역을 문제 삼고, 새만금 특별 지방자치단체연합 등 전북 전체의 협력 과제를 관할권 압박 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행위임
-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치적 압력, 지역 간 안배, 나눠주기식 결정을 배제하고, 확립된 기준과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에 따라 새만금신항 매립지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해야 함.

4. 참고사항

- 결의문 : 별첨
-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새만금신항 매립지 합리적 관할결정 촉구 및 지역갈등 조장 행태 규탄 결의문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조성 중인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산업·물류 수요를 지원하고 대한민국 환황해권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국가기반시설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새만금신항과 배후지역의 행정질서 및 새만금의 미래 발전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국가적 판단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매립지 관할결정은 새롭게 조성된 토지의 이용계획, 전체 개발구도, 연접관계와 접근성, 경계의 명확성,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절차이다.

새만금 2호 방조제,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것은 김제시에 대한 특혜나 지역별 면적 안배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확립해 온 판단기준을 적용한 합리적 결과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새만금신항 관할결정에서 김제시를 불리하게 판단하거나, 새만금신항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지역별 몫 나누기에 불과하다.

새만금신항의 지리적·기능적 관계는 명확하다. 새만금신항은 진입 도로를 통해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고,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농생명용지 및 새만금 내부개발지역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접근·개발축에 포함되어 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물류, 차량 이동, 항만근로자 정주, 기업지원, 생활서비스, 도로·교통·환경·재난 대응 등 실제 행정수요 역시 김제권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운영과 해상안전은 국가와 항만관리청의 권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역할은 항만 배후지역에서 주민과 근로자, 기업에 필요한 지역행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항만 운영 경험이나 주변 해상행정 관행을 새롭게 조성되는 매립지 관할의 결정적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최근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신항 관할 문제를 이유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인사까지 문제 삼고, 공직자의 출신지역을 거론하며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주장을 펼쳤다. 나아가 김제시가 정당한 관할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어떠한 협력과 협상도 없다는 입장까지 밝히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 등 전북 전체의 협력 과제마저 관할권 압박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정치적 공세와 지역갈등의 도구로 활용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다. 매립지 관할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적당히 나누거나 지역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하기 위한 정치적 절충의 수단이 아니다. 외형상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하나의 기능적 항만공간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합리적 조정이 아니라 명백한 ‘나눠주기식 결정’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내려야 할 결론은 분명하다. 새만금 2호 방조제,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것과

동일한 기준을 새만금신항에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신항의 지리적 위치와 육상 접근축, 배후도시 및 내부개발지역과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새만금신항 매립지 전체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군산시의회의 지역갈등 조장 행태와 전북 전체의 협력 과제를 관할권 압박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치적 압력과 지역 간 안배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 기존 관할결정과의 일관성, 새만금 전체의 미래를 기준으로 새만금신항 매립지 전체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군산시의회는 공직자의 출신지역을 문제 삼고 전북 전체의 협력 과제를 관할권 압박 수단으로 삼는 지역갈등 조장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라.
(심의하라! 심의하라! 심의하라!)

하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2호 방조제, 동서도로 및 스마트 수변도시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것이 확립된 판단기준에 따른 당연한 결과임을 명심하고, 이를 김제시에 불리한 사정으로 삼지말라.
(삼지말라! 삼지말라! 삼지말라!)

하나.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와
연접관계, 행정효율성, 주민 편의성 및 내부개발지역과의
기능적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만금신항 매립지
전체를 김제시 관할로 의결하라.
(의결하라! 의결하라! 의결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결정 결과를 존중하고
새만금신항의 조기 활성화와 새만금 3개 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라.
(협력하라! 협력하라! 협력하라!)

2026. 7. 31.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